

서울고법 2005나 84701

공개 질의서

질의단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탈락 교수 협의회(공재협)

대표: 김명호, (010-5590-8913), 이춘길(011-380-4228), 윤병만

수신: 대법원장 이용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967(서초로 219), 137-750

참조: 국회 법사위원회, 대법관 후보자

제목: 대법원 판례 77 다 300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과 그 위법 변경

이용훈 대법원장님

공재협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 모임입니다.

각 개인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부당 재임용 탈락 당한 사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공재협 교수들 복직에 있어 근본적인 걸림돌은, 법원조직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들입니다.

그에 관련하여, 공재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대법원장님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1. 대법원 판결 77 다 300(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 7 조 제 1 항의 3 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 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참조자료 1, 2, 3).

2. 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http://glaw.scourt.go.kr/>) 에는 77 다 300 에 명시된 판시사항 2, 판결요지 2 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참조자료 4)

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 조의 2 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 18 조,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 2 항




3.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제 3 항 자체는, 2003 년 2 월 헌법불합치 결정
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
체만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
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 다 52647, 2003 재다
262, 주심:양승태)


대법원장님의 해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6. 8

공재협 대표, 김명호



【별표 제4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6054	
발급일시	
2006. 6. 9.	취급자인 